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21일
- 나. 제출자 : 신흥식 의원 외 4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정함(안 제3조).
-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의무대상과 설치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에서 의무설치 대상으로 정한 장소 외에 가급적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범위를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필요시 응급医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장혈관질환의 갑작스런 이상 징후와 같이 미리 예측해 대비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 자동제세 동기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나, 심장제세동기 설치 이후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설치장소나 사용법도 모른 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총 88대의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홍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
----------	-----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신홍식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정함(안 제3조).
- 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의무대상과 설치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 마.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관내 초·

중·고등학생 등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의 약 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은 영등포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 시설

마.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사용방법 및 심폐소
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